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30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9. 6. 12.자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자매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라 한다)은 2016. 6. 9. 발행주식 총수 2,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총 발행주식 절반인 1,000주를, D가 나머지 절반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 B는 2017.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최초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 6. 12. 원고들에게 취득세 39,098,080원, 농어촌특별세 3,369,1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바, 이는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원고 B가 2017.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원고 A와 D가 각 50%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원고 B가 2017. 12. 31.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규정의 내용과 이에 관한 법리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주주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참조). 또한 주식의 소유관계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주주명의자가 실제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 및 이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책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는지 아니면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2. 31.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는지는 결국 원고 B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서 그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고, 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3, 6, 7, 10 내지 16호 증, 을 1,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원고 B이고, 원고 B가 그 주식을 D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B와 D 사이의 2016. 6. 9.자 '주주명의의 신탁약정서'가 존재하나, 원고들은 원고 B와 D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경위 및 동기에 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D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7. 2. 3.자 주식양도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D가 발기인 및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B가 실질적으로 위 발기인총회 등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③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는 D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데 반하여 원고 B는 감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

④ D는 세무당국에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⑤ 원고 B는 2016. 5. 13.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5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위 주식의 주금은 그로부터 약 3주 후인 2016. 6. 7. 납입된 것으로 보아 위 500만 원이 위 주식의 주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은 명의신탁대가로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의 이익배당금으로 원고 B에게 15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⑦ 증인 E은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D가 아닌 원고 B와 업무를 논의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다. 위 법인의 실질 주주는 원고 B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법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위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관해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원고 B가 위 법인의 세무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원고 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⑧ 증인 D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은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 B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지만, D는 이 법정에서 원고 B와의 관계, 명의신탁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증언 내용이 단편적·요약적인 것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남편 아는 분의 지인의 부탁으로 약 1년 6개월 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끝.